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13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06일

발 의 자: 이병도, 김 경, 김규남,
김동욱, 김성준, 김영철,
김용일, 김춘곤, 박영한,
박철성, 서준오, 성흠제,
송도호, 아이수루, 유정인,
, 유정희, 윤종복,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임만균, 한 신 의원(23
명)

1. 제안이유

- 서울시와 직접적인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당사자 뿐 아니라 서울시가 설립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과 상대기업에까지 생활임금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생활 개선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면서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조건 향상 및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체결 상대방의 소속 노동자 또는 해당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3항)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를 “체결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체결 상대방의 소속 노동자 또는 해당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과 제3항의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으며, 계약 대금 산출시 생활임금이 노무비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3020200000022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이병도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류동균 주무관

접수일 : 2023.02.02.

회신일 : 2023.02.06.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 제3항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8조 제4항 시장의 생활임금 적용기업 우대 및 계약 대금 산출시 생활임금이 노무비용 반영 노력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서울시 예산지출증가가 예상되나, 객관적 추계자료가 없어 구체적 비용 추계는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제1항 제2호)

- 생활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이고,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2022.9.16. 字)상 시급 11,157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약 16%가 높아 적용대상을 확대할 경우 상당한 예산지출 증가가 예상됨
- 위 고시상 2023년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는 아래와 같음
 - ① 서울특별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 ※ 공공근로 등 국비보조 사업은 적용 제외
 - ② 서울특별시 투자,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
 - ③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지원 민간위탁사업은 적용 제외
- 그런데, 안 제8조 제3항을 신설하여 서울시가 설립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체결 상대방의 소속 노동자 또는 해당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8조 제4항 시장의 생활임금 적용기업 우대 및 계약 대금 산출시 생활임금이 노무비용 반영 노력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서울시 예산 지출증가가 예상되나 객관적 추계는 어려움
- 2023년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는 서울시, 투자[통상적으로 투자기관(서울시 지방공사 및 공단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호)은 지방공기업을 말함],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

는데, 적지않은 수의 위탁·용역·조달 등이 낮은 임금으로 재하청, 3차 하청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정확한 규모에 대한 통계는 없음. 서울시는 과거 파악이 비교적 용이한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계약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하여 서울연구원 연구용역(2014)으로 처리한 사례로 보아, 객관적 추계는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 추정 가능할 것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과장

추계세계팀장 이정수 팀장

분석관(주무관) 류동균 주무관

☎ 02-2180-7952

e-mail : rooster72@seoul.go.kr